

1. 업체 기본현황

가. 회사소개

나. 운영조직(단체 급식 부문 구분)

다. 회사연혁

2. 회사경영상태(2014년도 결산서 기준)

항 목 별	산출내역 및 금액			비율(%)	비 고
총매출액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총 자 산		
부채비율	총 부 채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매출액대비 순이익비율	당기순이익				

3. 단체급식 운영실적 및 시설보유 현황

가. 운영실적(입찰등록 마감일 최근2년간 단체급식 운영 실적)

위탁기관명	1일급식인원 (중식기준)	급식단가	연간매출액	급식 기간	위 치

※ 수탁운영중인 급식기관 중 1일 200식 이상의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업체의 확인서를 위탁업체의 확인을 받아 제출(계약서 사본 가능).

단, 자사계열사 위탁운영분은 제외

나. 시설보유 현황

- 급식 관련 인프라 보유(생산 공장, 물류센터, 식재료 전처리 시설 등) 현황
- 자체 상품 개발 현황(단체 급식 관련 여부 포함) 등

4. 단체급식 세부운영계획

가. 운영 관리 계획

- 식당 운영인력(전문인력 배치) 등 투입 현황
 -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등 종사원 운영계획 (정규직, 도급, 파견 등 고용형태 명시)
- 식재료의 수급 및 관리의 구체적 제시
 - 식재료의 위생 및 안전관리방안 제시
- 식단 구성 및 운영
 - 운영시산표 : 식재료, 노무비, 기타 운영비의 구성비율
 - 메뉴표 작성 제출 : 4계절로 구분하고 각 계절별 4주식단 메뉴표
 - 식재료 사용 원산지 제출
- 중식이외의 급식(조식, 석식 등) 제공 의견 및 가격

나. 신선한 메뉴개발, 제공을 위한 방안

- 식당 운영(시설 개선) 관리 방안
- 음식, 맛, 질 향상을 위한 고객 서비스 방안

다. 위생관리방안

- 식중독 예방계획
- 위생관리계획(소독, 청소, 폐기물 등)
- 식자재 및 음식물 관리계획
- 조리원 교육계획
- 각종 보험가입 및 배상규모

라. 조리기구 설치 및 식당 환경 개선 계획(투자금액 명시)

- 조리기구의 설치 및 개선 계획
 - 설치품목 : 조리기구 기설치 중 개선품목 명기할 것
 - 보건소와 인수인계를 추진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처리지침」에서 규정한 내용연수 5년에 대해 감가상각율(정률법)을 적용함
- 실내인테리어 창의적 개선 방안(개선 시)
- 식당환경(식판, 식기류 포함) 청결 관리 방안

마. 기타 운영방안

- 자체요리가 불가능할 경우의 대책
- 이용직원의 의견수렴을 위한 제도 및 만족도 평가결과 수용도 반영
- 식대징수, 정산 방법 제시
- 기타 타사와 차별화된 장점, 운영시스템 제시

5. 후생복지 기여도

- 식당운영에 따른 이용직원에 대한 혜택 및 서비스
- 특별행사 및 비상근무자 등 지원계획(명절, 절기 및 을지훈련 등 식사 제공 방안)

6. 사업제안서 작성방법

□ 작성기준

- 사업제안서는 가급적 A4용지(가로쓰기, 횡)를 가급적 사용하고 10쪽 이내로 함
- 사업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업체 선정 후에도 취소 됨
- 서류제출은 성북구보건소 건강정책과 보건행정팀(02-2241-5905)으로 직접제출(우편 접수불가)

□ 사업제안서 유의사항

- 사업제안서 심사 후 선정업체 개별 통보 외에 심사내역은 공개하지 않으며, 참가자는 이점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는 반드시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고 목차 순서를 유지하여야 함
-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 금지(“~할 수 있다”, “~ 가능하다고 본다”, “~ 할 계획이다”, 등과 같은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봄)
- 사업제안서 작성 및 설명 시 타업체 비방금지 : 감점처리
- 선정업체와의 협약서 작성 시, 사업제안서 내용과 다른 사항 등을 제시하면 업체선정을 취소 함
- 제안서 제출 시 누락되거나 불분명한 내용이 있는 경우 또는 증빙서류를

미첨부한 경우에는 해당항목에 대한 점수 미부여

- 제출된 제안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참가자가 부담해야 함
-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지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해야 함

※ 마지막 쪽에 포함될 사항

1식 단가(중식)	간 식(조식식)	1년간 사용료(천원)

위와 같이 성북구보건소 내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15. 8. .

상호 또는 명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 제안서 작성 제출시 누락되거나 불분명한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대한 점수부여 제외

서 약 서

1. 본 제안자는 성북구보건소에서 모집 공고한『성북구보건소 내 구내식당 위탁운영 업체 선정』에 대한 제안요청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제출 제안서의 허위 기재 또는 부실 자료 작성으로 인하여 초래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 등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성북구보건소에서 구성한 심사위원과 심사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조건 없이 승복하고 일체의 법적 이의제기나 자료공개 및 제출서류 반환요청을 하지 않는다.
3. 본 공고와 관련하여 성북구를 방문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 작성을 위한 회사의 노력에 대하여 대가를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 및 자료 등은 당해 입찰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2015. . .

상호명 : (인)

주 소 : (인)

대표자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성북구보건소장 귀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시행하는 성북구청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자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월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하도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1)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6월
 -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2) 입찰 또는 낙찰자의 결정과 관련하여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미만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9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익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 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 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계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 성북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익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5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보건소장 귀하

<별첨 5>

구내식당 위탁급식 운영업체 선정 평가표

▣ 업체명 :

구분	세부항목	배점	평가기준		심사점수
			기준	평점	
업체규모 및 재무상태	매출액	3	A. 1000억 이상	3	
			B. 500억~1000억미만	1	
	위탁사업장 (1일평균 식수인원 200명이상)	3	A. 10개 이상	3	
			B. 3개~10개 미만	1	
	부채비율(총부채/자기자본)	4	A. 100%미만	4	
B. 100~150%미만			3		
C. 150%이상			2		
운영관리	인력운영 및 식재료 수급 관리 계획	12	A. 좋음	12	
			B. 보통	9	
			C. 나쁨	6	
	다양한 메뉴의 구성 및 제공을 위한 방안	15	A. 매우 좋음	15	
			B. 좋음	13	
			C. 보통	10	
			D. 나쁨	9	
			E. 매우 나쁨	7	
	위생관리방안	11	A. 좋음	11	
			B. 보통	8	
			C. 나쁨	5	
	식당 환경개선 계획 및 기타 특수사항, 운영방안	12	A. 좋음	12	
B. 보통			10		
C. 나쁨			7		
고객서비스 및 기타	후생기여도 - 특별행사 및 비상근무시 지원계획 - 이용직원에 대한 서비스	15	A. 매우 좋음	15	
			B. 좋음	13	
			C. 나쁨	9	
	고객불만 처리 및 만족도 평가결과 수용 방안	10	A. 좋음	10	
			B. 보통	7	
			C. 나쁨	5	
연간 공유재산 임대사용료 납부액	15	A. 2,000천원이상	15		
		B. 1,500천원이상	10		
		C. 1,000천원이상	5		
총점	합계	100			점

2015. 9. .

성북구보건소 구내식당 심사위원회 위원 소속 직급 성명 (인)